

정보공시제

- 교육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과제

김 병 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I. 머리말

「교육정보공개법」이 내년 5월 26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됨으로써,¹⁾ “교육 관련 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관련 기관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법안 제안이유)가 마련되었다.

교육정보의 공개는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 상호 비교와 자극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과 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대학에 안겨줄 전망이다. 지금도 대학들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또는 경영공시 형식으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소상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에 따라 이미 국립·사립을 불문하고²⁾ 정보공개를 요청받을 경우, 소정 절차에 따라 개별 교육기관들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정보의 공개, 나아가 구체적 요청에 기하지 않은 의무적이고 정기적인 공시를 요청하는 정보공시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긍정하면서도 다소간 그 범위와 정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없지 않았다(김병주a, 2005: 49ff).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고등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학정보공시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초·중등교육기관의 교육관계정보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교육정보공개법으로 제정되었다.³⁾ 그런데 최근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대학평가 및 그 결과의 공시를 의무지우는 근거 규정이 입법됨으로써, 대학정보공시제는 교육정보공개법과 고등교육법 등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1)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제정 2007. 5. 25, 법률 제8492호, 이하 ‘교육정보공개법’으로 약칭).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현재 금년말 공포 예정으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07. 1. 3, 법률 제8171호, 이하 ‘공공기관정보공개법’으로 약칭). 법률 명칭을 보면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 제2조 및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2조 1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라고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어, 사립대학들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 3) 시행령안에 제시된 정보공시의 범위를 보면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15개 항목, 55개 내용, 고등교육기관의 경우는 13개 항목, 62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고등교육법 보완 개정으로 대학평가 결과도 공시항목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가에 많은 파장이 예상되지만, 일단 입법이 마무리된 이상 정보 공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 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은 대학 경영의 새롭게 변화된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II. 입법추진 경위

- 2004.12.28. 정부,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발표
- 2005.04.07.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이주호 의원 발의)
- 2005.08.30. 정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05.11.11.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정봉주 의원 발의
-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대학정보공시 관련 조항 폐기(2005.11.03) 후 의원 입법(정봉주 의원)으로 대체 추진
- 2007.04.30.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의 공개에 관한 특례법」(이주호 의원 발의) 법안 명칭 변경 및 일부 내용 수정하여 국회 통과 → 2007.05.25. 위 특례법 제정 · 공포, 시행일 2008. 5. 26.
- 2007.07.24. 교육부, 전국 10개 대학 대학정보공시제 시범운영계획 발표

- 2007.09.13. 위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초안 발표
- 2007.09.20.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학 평가 및 공시 근거 조문 제11조의2 신설) 국회 통과 → 2007.10.17. 위 법 제정 · 공포, 시행일 2008. 4. 18.

이 법의 제정경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급 과잉을 문제시하고 그 대응 사이징을 전제로 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수단으로 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 평가를 원용하려 했던 것이다.⁴⁾ 아쉽게도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의원입법 형식으로 교육정보공개법이 제정되고, 추가적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처음부터 법체계상의 불균형과 미비점을 안고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III. 정보공시제 도입의 불가피성과 한계

이 제도 도입의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입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는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4) 정부는 구조개혁의 다른 수단으로 정부주도의 대학평가를 위하여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설립의 근거법을 제정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학 평가와 그 결과의 공시를 통하여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했다면,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규정과 더불어 주기적 질 관리를 위한 기관 평가 또는 프로그램 평가 실시를 위한 근거법을 입법을 먼저 추진했어야 했다고 본다(김병주, 2005: 51). 평가에 관한 근거법규 입법을 통한 대원칙이 정해지면, 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실시할 것인가는 부차적인 문제였는데, 명칭은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이지만 실제로는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만들어진 정부 초안에 집착한 나머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정부의 평가를 통한 대학통제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우파 야당의 반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교착상태가 지속되던 중, 뜻밖에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 소관으로 옮기는 법 개정 과정에서, 이들 대학의 질 관리 문제가 등장하자, 사이버대학은 물론 일반 고등교육기관까지 포함하는 질 관리의 대원칙을 정하는 제11조의2(평가)를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 평가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법 제6조와 시행령안 별표 2와 같이 광범위한 자료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공익적 목적이 중요한 만큼, 개별 대학의 사적 자치와 이익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자칫 대학의 자율이나 육성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대학 운영자의 자긍심에 상처를 줄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과도한 규제적 요소는 가급적 자제하면서 적용하고 본래의 입법 취지에 상응한 시행이 되도록 정책당국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인 법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선택기회 확대라든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IV. 법체계

이 법은 목적조항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제4조),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특히 이 법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과 중첩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향후 교육 관련 기관과 연구자 간의 미묘한 갈등을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 제12조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에서, 공공기관을 '교육 관련 기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각각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

V. 주요 내용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법은 고등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기관의 정보 공시에 관한 내용도 포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전자에 관련된 사항만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1. 주요 개념에 대한 입법적 정의

이 법에서는 사전적 의미에 대한 해석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소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개념을 입법적으로 정의하였다(제2조):

- '정보' : 교육 관련 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 : 교육 관련 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 '공시' : 교육 관련 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⁵⁾.
- '교육 관련 기관' :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
- '교육행정기관'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

5) 신청인의 요구와 관계 없는 의무적 공개를 '공시'라고 입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일차적으로는 공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공개에 관한 것은 부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 명칭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3항에 따른 기관.

- ‘교육연구기관’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2. 기본원칙

대학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이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가 공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아니되며(법 제3조), 법문에 명시되지 않는지만 보호되어야 할 정보에는 대학 ‘직원’의 개인 정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첨단을 걷고 있고, 몇 해 전 ‘NEIS 사태’를 체험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법이 정부로 하여금 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면서(법 제6조; 시행령안 제5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6조 각호의 13개 항목 및 시행령안 별표 2에 정한 62개 세부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이 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 분야 공시대상 정보]

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법 제6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학교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법 제6조). 교육정보공개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평가조항이 신설된 고등교육법 개정이 있었으므로 제6조에서 누락되었지만, 차후 이 법 개정 시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⁶⁾ 아울러 지난 9월

6)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①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회,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0.17)

13일 공개된 시행령안 별표 2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에 정한 공시대상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범위·횟수 및 시기는 시행령(안)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다[부록]. 다만, 공시정보의 특성, 산출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공시의 횟수 및 시기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정보는 학부(과)별 전공단위 또는 학교단위로 공시하며, 대학원 관련 정보는 대학과 구분하여, 종류별(일반·전문·특수대학원)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되는 정보는 공시일 기준 최근 3년 간 누적된 것이어야 한다(시행령안 제4조).

4. 고등교육기관 정보의 통합 공시

교육부장관은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기관의 장이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를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별도로 표준화하여 공시할 수도 있다(시행령안 제5조).

13개 항목 60여 개 세부 사항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취합 관리하는 일은 대학으로 보나 관리기관으로 보나 막중한 부담이 된다. 업무의 간소화 및 취합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용어정의와 세밀한 양식 개발이 필수적 전제조건이 된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시범운영과정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의 소재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2007. 1. 31. 한국교육개발원과 대교협을 비롯한 17개 기관이 참여하여 체결한 '인적 자

원통계 협력망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개별 기관이 취합한 통계를 계약기관들이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는데, 앞으로 정보공시제의 통합 운영과정에서 후술하는 총괄 또는 항목별 관리기관으로서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 학교의 정보공시 방법

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비하여 공시자료를 별도로 비치하며, 요청시 공시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안 제6조).

현재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자체 홈페이지를 보유하여,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초기 화면에 일정 규격의 배너를 마련하여 "교육정보공개법 제6조에 따른 공시정보"라는 제목을 붙여,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13개 항목의 공시대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공시정보는 최근 3년 동안의 것이 올려져 있어야 하고, 개별 정보는 시행령안 별표 2에 정한 주기에 맞추어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6.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법은 교육부장관이 총괄 또는 항목별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시행령에서는 지정받으려는 자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은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가 제출한 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시행령안 제7조).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신뢰

도 검증의 주체와 방식에 관한 사항이 불분명·불충분하여 제도 운영상의 혼란이 있지 않을지 염려된다. 교육부장관의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 시에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있을 줄 알지만, 신뢰도 검증절차를 강제하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7.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법은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정보공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정보공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하였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8조).

법이 제7조에서 총괄관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무리 장관에 대한 자문기관이라 하더라도 양기관이 기능상 중복될 수 있다는 의문이 있다.

8. 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교육 관련 기관의 장은 연구자 등에게 학술연구 진흥과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해당 기관 보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는 해당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개별 교육 관련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여부 나아가 제공범위를 결정한다. 자료 제공절차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 내지 제12조 소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본래 목적 외에 부정으로 사용하거나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벌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법 제8조

및 제11조; 시행령안 제9조).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므로 개별 대학 등은 연구자 등이 요청할 경우 보유하는 모든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유정보는 생성 연도, 비밀유지의 필요성, 정보의 중요도, 지적재산권적 가치 등 여러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정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체 기준에 따라 정형화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자료 제공과 관련된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자료 제공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시행령안은 '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양자 간의 기능상 차이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하위규범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로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9. 시정 또는 변경명령

대학 등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정·변경명령과 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상의 제재⁷⁾를 받는다(법 제10조).

7) 高等教育法 第60條 (是正 또는 變更命令) ①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가 施設·設備·授業 및 學事 기타 사항에 관하여 教育關係法令 또는 이에 의한 命令이나 學則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學校의 設立·經營者 또는 學校의 長에게 그 是正 또는 變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1.1.29).

② 教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 또는 變更命令을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取消 또는 停止하거나 당해 學校의 學生定員의 감축, 學科의 廢止 또는 學生의 모집정지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이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개별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시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대학 등의 장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을 때는 14일 이내에 공시정보의 내용을 시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각종 조치처분을 받은 대학의 장이 개별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시행령안 제11조).

교육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재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을 위한 권리 구제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학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 소정의 일반적인 권리 구제절차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는 있다.

10. 정보공시 책임자 지정

교육 관련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시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시 작성자와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점검·확인하고, 오류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안 제12조).

공시정보의 신뢰도 확보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각종 장치와 더불어, 원천적으로 자료 작성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VI. 맺음말

정보공시제가 대학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으로 예견된다. 표면상의 입법취지와 달리 정부가 당초 입안할 때부터 대학 평가제도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의 수단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과거 여유로운 시절 대학간의 단순 경쟁이 아니다. 물론 그동안 전통과 사회적 명성의 신기루에 빠져 특혜를 누려온 세칭 명문대학, 일류대학의 실체가 보다 소상하게 드러나게 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구체적인 개별적 지표의 비교를 통하여 우열이 가려지게 되므로, 대학입학 지원자,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파트너를 물색하는 기업, 나아가 졸업생의 고용주 등이 선택을 할 때, 그 기초자료로 공시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은 원천적으로 자체적인 교육과 연구역량을 키워 나가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이나 대학 운영자와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손상시킬 소지가 많은 규제적 요소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당국자,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은 이 점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차후 관련 법규 개정과정에서 가다듬어져야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대학은 자료 수합 및 보고에 따른 많은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공시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하고, 개별 정보의 구체적 내용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하고 명확한 개념 정의와 양식 개발, 수합 시스템의 합리화·정형화는 불가결한 급선무가 된다. 시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은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제 대학은 자신의 약점을 덮어둘 수만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강제적인 공시제도에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학발전과 자원

유인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시점인 것이다. 그 전제는 대외적으로 보여줄 만한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부 록

[시행령안 별표 2]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범위, 횟수 및 시기

정보공시항목	정보공시내용	공시기관	공시횟수	공시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1. 학교규칙(학칙)	대학	수시	수시
	2. 학칙외 제규정	대학	수시	수시
	3. 학교현장	사립대학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 학과(부)별 교육과정 편성 및 학점	대학	연1회	3월
	2. 학과(부)별 학점·평가기준	대학	연1회	3월
	3.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분포)	대학	연1회	3월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1. 대학입학(편입학)전형시행계획	대학	연2회	2월, 8월
	2. 모집요강(학과(부)별 입학정원 포함)	대학	연2회	2월, 8월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1. 입학 현황	대학	연1회	9월
	2. 신입생 충원율	대학	연1회	9월
	3. 학생 충원율	대학	연1회	9월
	4. 재적학생 현황	대학	연1회	9월
	5. 전공심화과정 학생 수	전문대학	연1회	9월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 졸업생 수	대학	연1회	9월
	2.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현황	대학	연1회	9월
	3. 졸업생 순수 취업률	대학	연1회	9월
	4. 정규직 취업률	대학	연1회	9월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 전체 교원 현황	대학	연1회	9월
	2.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대학	연1회	9월
	3. 교원 확보율	대학	연1회	9월
	4. 외국인 교원 현황	대학	연1회	9월
	5.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대학	연1회	9월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1.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대학	연1회	9월
	2. 저·역서 실적	대학	연1회	9월
	3.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수혜실적	대학	연1회	9월
8. 예·결산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	연1회	2월
	2. 기성회계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	연1회	3월
	3.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국·공립대	연1회	3월

정보공시항목	정보공시내용	공시기관	공시횟수	공시시기
8. 예·결산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예·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	사립대학	연1회	9월
	5.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1회	9월
	6.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사립대학	연1회	9월
	7. 적립금 현황	사립대학	연1회	9월
	8. 기부금 현황	사립대학	연1회	9월
	9. 산학협력단회계	대학	연1회	9월
9. 「고등교육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제60조)	대학	수시	수시
	2.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제61조)	대학	수시	수시
	3.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제62조)	대학	수시	수시
10.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 학교 발전계획	대학	수시	수시
	2. 특성화계획	대학	수시	수시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 교내 연구비 지원 현황	대학	연1회	9월
	2.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대학	연1회	9월
	3. 실험실습비 현황	대학	연1회	9월
	4.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1회	9월
	5. 산업체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1회	9월
	6. 산업체 공동(수탁/위탁) 연구비 및 연구계약 건수	대학	연1회	9월
	7.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건수	대학	연1회	9월
	8.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대학	연1회	9월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 장서보유 현황	대학	연1회	9월
	2. 도서관 직원 수	대학	연1회	9월
	3. 도서관 예산 현황	대학	연1회	9월
	4. 연구시설 현황	대학	연1회	9월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1. 정관	사립대학	수시	수시
	2. 법인의 지배구조(임원 현황)	사립대학	수시	수시
	3. 토지 현황	대학	연1회	9월
	4. 건물 현황(교사, 연구, 지원, 부속시설 등)	대학	연1회	9월
	5. 교육기본시설 확보율(현황)	대학	연1회	9월
	6. 기숙사 수용 현황	대학	연1회	9월
	7.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립대학	연1회	9월
	8.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대학	연1회	9월
	9. 전체 직원 현황(정규직, 비정규직)	대학	연1회	9월
	10.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1회	9월

참고문헌

- 김병주(2005a). “대학정보공시제 - 입법론”, 대학교육(한국대학교육협의회) vol. 136, 2005년 07/08월호, 49-55면.
- 김병주(2005b). “대학평가의 법적 문제 : 입법론”, 교육법학연구(대한교육법학회) 제17권 1호, 2005년 6월, 31-54면.
- 김창환(200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제34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2007. 09. 13. 3-19면.
- 박재운·채재은·김태경(2005).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에 관한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병주

국민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고, 독일 튀빙엔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는 『독일소년사법보호제도』(공저), 『북한정부론』(공저), 『가정폭력』, 『대학정보공시제』, 『대학평가의 법적문제 : 입법론』, 『독일대학의 자율 강화 움직임』, 『로스쿨 도입경과와 주요쟁점』 등이 있다.